

## 구금고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

의 安	
번 호	33

제안년월일 : 1993. 12. 24.

제 안 자 : 정환모의원외 29인

### 제 우 이 으

구금고 계약 및 제반 경리 사항과 행정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금고 운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 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임.

### 주 요 과 程

#### 1. 조사의 목적

구금고 계약 및 구청 재무과 소관 예산 집행의 경리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구금고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고자 함.

## 2. 조사의 범위

- 구금고 계약 사항
- 구금고와 관련한 제반 경리 사항
- 구금고와 관련한 행정 사항
- 구금고와 관련된 관계법 규정에 의한 구금고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
- 구금고와 시금고와의 관련 사항
- 구금고의 구지원 사항
- 재무과 소관 예산 집행의 경리 사항 등

## 3. 조사 방법

-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.
- 기타 조사방법, 조사기간, 조사장소 등 세부사항은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별도 규정한다.